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금액으”를 “금액의 2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로 한다.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며 과징금의 감경 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비용 지원

별표 3 제2호가) 및 나)를 각각 나) 및 다)로 하고, 같은 호 가목3)나)(종전의 가목3)가)) 위반행위란 나) 중 “50퍼센트 이상을”을 “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”로 하며, 같은 호에 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)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	100	200	300
---	-----	-----	-----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당한 표시·광고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기준(제13조제3항 관련)

- I. 일반기준
- 부당한 표시·광고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금액은 II. 과징금 조정기준에 따른 각 호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.
- II. 과징금 조정 기준
1.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조정 금액
- 가. 법 제8조제1항제1호(질병 예방·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·광고)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을 유지한다.
- 나. 법 제8조제1항제2호(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·광고) 및 같은조 같은 항 제3호(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·광고)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.
2.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 금액
- 가.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의 횟수를 고려하여 위반 기간이 짧고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해당 품목으로 인한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.
- 나. 가.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위반 영업자가 부당한 표시·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위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없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3조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조(부당한 표시·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)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부당한 표시·광고를 한 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<u>금액</u> 으로 한다.	제13조(부당한 표시·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금액의 2배</u> ----.
② (생략) <u><신설></u>	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며 과징금의 감경 기준은 별표 4와 같다.</u>
③ <u>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·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.</u>	④ <u>제1항부터 제3항까지</u> ----- ----- -----.
제15조(권한의 위임) ① (생략)	제15조(권한의 위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</u>	② ----- -----

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장에게 위임한다. <u><신 설></u> <u>1. ~ 8.</u> (생 략) ③ (생 략)	----- -----. <u>1.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비 용 지원</u> <u>2. ~ 9.</u> (현행 제1호부터 제8호 까지와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--	--